

'23.7.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안내



'23. 7. 3.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안전망강화TF

차례

1

제도개선 추진 배경 및 경과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4

플랫폼 운영자 특례

5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1. 제도개선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현행 특고 전속성* 요건에 따라 특고·플랫폼 종사자 보호 한계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보상제도 개선 필요성 증대

*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것(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제1호)

◆ **(추진 경과)**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적용 및 보상제도 개선 관련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2.6.10.) → '23.7.1. 시행

●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및 고시 발령('23.6.27.~30.)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 비교>

구분	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전속성 요건	반드시 충족	폐지
입·이직 신고	신고 필요	(원칙) 폐지
적용제외신청	사유발생 시 신청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제외)	폐지 ※ 휴업신고제도 도입(기준보수 적용 직종 중 부과고지사업에 한정)
보수	기준보수	(원칙) 실보수
보험료율	사업장의 사업종류별 요율	노무제공자 직종별 요율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적용	미적용 → 종사자의 재해와 사업장 요율 무관
하나의 사업 내 장소적 분리 사업장 관리	분리적용	(원칙) 하나의 관리번호로 적용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사업주	(원칙) 플랫폼 운영자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

◆ 적용대상자(노무제공자)

- 現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재정의
※ (플랫폼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①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②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 현행 산재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의 노무제공자와 추가 적용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으로 정의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

-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화물차주**(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4호)
 - 특정 품목·산업(시멘트, 철강재, 유통산업 등) 구분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로 적용확대(전속성 요건 폐지로 **용차 화물차주 포함**)
 - 자동차관리법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과 사다리차를 포함**
 - ※ 화물차주 중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해당 직종으로 적용

(정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해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개인 운송사업자)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위·수탁 차주)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제 1항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 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세부 유형(자동차등록규칙 별표1)

종류	유형	화물자동차 세부 유형	
화물 자동차 (3조1항3호)	일반형	일반카고트럭 등	
	덤프형	덤프트럭	
	밴형	일반밴형자동차(탑차)	
	특수용도형	피견인형 차량 (트레일러)	윙바디, 냉장·냉동차량, 트랜스포터, 곡물수송차, 탱크로리, 진개덤프, 이사회물수송차, 급수차, ①살수차, ②직진식·굴절식 카고크레인 등
			벌크트레일러, 컨테이너새시, 탱크, 평판, 코일 전용 트레일러
		덤프, 저상, 모듈, 폴 트레일러	
특수 자동차 (3조1항4호)	견인형	트렉터(트레일러 연결 운송 차량)	
구난형	구난형	렉카	
	특수작업형	구급차, 방송중계차, 사다리차, ③고소작업차 등	

* ①,②를 제외한 □와 사다리차는 화물차주 직종(14호), ①,②,③은 건설현장 화물차주 직종(13호)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화물차주의 범위 및 직종 적용 기준

※ □의 종사자에 대해 현재 ('23.7.1. 이전) 산재보험 적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화물차주

택배기사

도보, 신용카드
등 택배기사(5호)

화물차주인
택배기사(5호)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자가용 화물차
(12호)

화물차주인
가전 설치원(12호)

퀵서비스기사

라이더
자가용[화물, 승합,
승용 등] (6호)

화물차주인
퀵 기사

일반
화물자동차
(견인형,
사다리차 포함)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기사
(시멘트, 철강재,
자동차, 곡물 등)

특수자동차
(견인형,
사다리차 제외)

건설
현장
화물
차주
(13호)

고소
작업차

살수차,
카고크레인

화물차주(14호)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보험가입자

◆ 보험가입자(사업주)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적용**
 - 여러 사업장에 노무제공 시 각각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에 해당
- **(화물 운송의 사업주)** 화물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요청하고 그 책임을 지는 자
 - **① 운송사업자, ② 자기계약 주선사업자(인수중), ③ 화주(사업자)**
 - * 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의 중개·대리만(선착불)을 행하는 경우 보험가입자 비해당. 원화주가 보험가입자에 해당
 - ** 화물차주가 개인인 화주로부터 직접 운송 의뢰를 받아 운송하는 경우 노무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아 산재보험법 비적용
- **(보험가입자 판단 방법)** 화물차주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
 - 다만,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계약 관계 및 운송료, 수수료 지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 판단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 주선사업자의 운송 형태별 보험가입자

구분	자기계약(인수증)	중개대리(선착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선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계약인수 방식) ○ 화물차주는 주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선사업자는 원화주와 화물차주의 계약을 중개만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 ○ 화물차주는 원화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구조		
보험 가입자	주선사업자	원화주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노무제공자 정보 관리

◆ 노무제공자 정보 관리

● 입직 및 이직 신고 제도 폐지

- 월 보수액 신고(후술)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정보를 관리(일용근로자 관리방식과 유사)

◆ 적용제외신청제도의 폐지

● 부상, 질병, 육아 등의 법정 사유 발생 시 제출하였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제도로 대체**

- 다만, 휴업신고는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고용부 고시)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한하여만 적용
- 화물차주 등 실보수로 보험료를 산정 직종의 경우 휴업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휴업신고 불필요

※ 고용보험의 경우 모든 직종 휴업신고를 하여야 함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

▶ ' 23.7. 이후 화물차주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및 부과 제도 비교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용차기사 적용	적용	적용제외	
적용대상 세부 유형	모든 화물차주 (품목·산업 구분 폐지)	특정 품목	시멘트·컨테이너·철강재·위험물질, 자동차·곡물·곡물가루·사료
		특정 산업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적용제외자	없음	연령(65세 이상자), 소득(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자), 외국인 등	
취득·상실	입·이직 신고 폐지	취득·상실신고 필요	
휴업신고	미신고	신고	
월 보수액	사업주가 신고한 실보수	유통배송기사를 제외한 모든 화물차주 기준보수 적용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산재보험료 및 월보수액의 산정

◆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에 ‘보험료율’ 을 곱하여 매월 산정

$$\text{산재보험료} = \text{개인별 월 보수액} \times \text{산재보험료율}$$

※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상한선·하한선 없음

◆ 월 보수액의 산정 ※ 보험료 징수체계를 ‘기준보수 → 실보수’ 로 전환

-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text{월보수액} = (\text{사업소득 A} - \text{비과세소득 B}) - \text{경비 C}$$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국세청 매월 신고) 또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등을 통해 확인 가능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경비 및 직종별 요율

◆ 경비

- ‘사업소득-비과세소득’의 일정 비율(경비공제율)을 경비로 인정
(고용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 ※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님

$$\text{경비} = (\text{사업소득 A} - \text{비과세소득 B}) \times \text{경비공제율}$$

- 경비공제율(고용부 고시): **30.3%** (고용보험 “유통배송기사”와 동일)

◆ 산재보험요율(직종별 요율) ※ 사업장(업종별)의 요율 → 직종별 요율로 전환

- 노무제공자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직종별로 고용부장관이 고시
※ 화물차주 '23년 직종별 요율 1.7% + 출퇴근재해 요율 0.1% 가산 = **총 1.8%**
- 노무제공자의 모든 업무상 재해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개별실적요율) 산정에 미반영**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

◆ 월 보수액의 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직종, **월 보수액** 등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
 - (상용형) 월 보수액 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1개월 미만 계약)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소득 증명 서류 첨부)

◆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월 보수액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재차 제출(신고서식=정정서식)**
-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정정 신고 시 사업주의 정정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보험료 감경 및 부담·납부

◆ 보험료 감경

- 한시적 운영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률을 고용부 고시로 정함
→ 화물차주에 대하여 '**23.7.~'24.6.까지 50%** 보험료 경감

◆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 납부

- 사업주(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자(화물차주)가 각각 ½씩 부담
- 사업주는 종사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본인 부담분과 합산하여 매월 납부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산재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료 산정 예시

- 화물차주의 7월 총 사업소득이 9,000,000원 경우(비과세소득 0원 가정)
 - 경비: $9,000,000 \times 30.3\% = 2,727,000\text{원}$
 - 월 보수액: $9,000,000\text{원} - 2,727,000\text{원} = 6,273,000\text{원}$ (소수점 이하 발생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산재보험료: $6,273,000\text{원} \times 1.8\% = 112,914\text{원} = 112,910\text{원}$ (원단위 절사)
 - 경감 보험료: $112,910\text{원} \times 50\% = 56,455\text{원} = 56,450\text{원}$
 - 실제 납부할 보험료: $112,910\text{원} - 56,450\text{원} = 56,460\text{원}$
 - 사업주 및 종사자 각각의 보험료 부담분: $56,460\text{원} \div 2 = 28,230\text{원}$ (원단위 발생 시 미절사)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산재보험료 부담

◆ 사업주·종사자분담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24. 1월 귀속분 보험료부터 적용)

-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1/2를 곱한 금액** ※ '23년의 산재보험료는 현행 방식대로 부과

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6,273,000원이고 직종별 요율(출퇴근재해요율 포함) 1.8%

구분	월 보수액 × 요율	산재보험료 (원단위 절사)	사업주·종사자 보험료 부담액
현행	6,273,000원 × 1.8% = 112,914원	112,910원	112,910 ÷ 2 = 56,455원
개정안	사업주	6,273,000원 × 0.9% = 56,457원	56,450원
	종사자	6,273,000원 × 0.9% = 56,457원	56,450원
	합계		112,900원
차액		10원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보험가입자 의무 및 사업장 관리

◆ **보험가입자의 주요 의무** ※ 보험가입자가 화주(사업자)인 경우에도 다음 의무 이행

①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최초로 노무제공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다만, '23.7.1. 전부터 노무제공자를 사용한 경우 '23.7.14.까지 신고)

② 월 보수액 신고(후술), ③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등

→ 오프라인으로 화물차주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위와 같이 신고.

다만, 화물 플랫폼(정보망)을 통해 화물차주를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사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위의 의무 이행(플랫폼 운영자 특례-후술)

◆ **사업장 관리 체계**

●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하나의 노무제공자 관리번호 부여**

-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지점 등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분리 적용 가능(다음 달 초일부터 분리 적용)

※ 기존 하나의 회사에서 노무제공자의 소속이 본·지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 분리적용 → **하나의 산재보험 관리번호로 통합**

4. 플랫폼 운영자 특례

◆ 제도 도입 배경

- 보험가입자의 보험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모든 노무제공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보험행정 의무를 이행

◆ 법적 정의(산재법 제91조의15)

- (온라인 플랫폼) 사업주로부터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
- (플랫폼 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예) 퀵기사, 대리운전기사, 음식배달기사, 화물차주 등
- (플랫폼 운영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예) 퀵·대리운전기사 및 화물차주 등에게 일감을 중개하는 플랫폼사
- (플랫폼 이용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보험가입자(사업주) 예) 플랫폼을 이용하는 퀵업체, 대리운전업체, 운수사업자 등

4. 플랫폼 운영자 특례

플랫폼 운영자 특례

◆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사업주이자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다음의 보험행정을 이행(플랫폼 운영자가 사업주가 아님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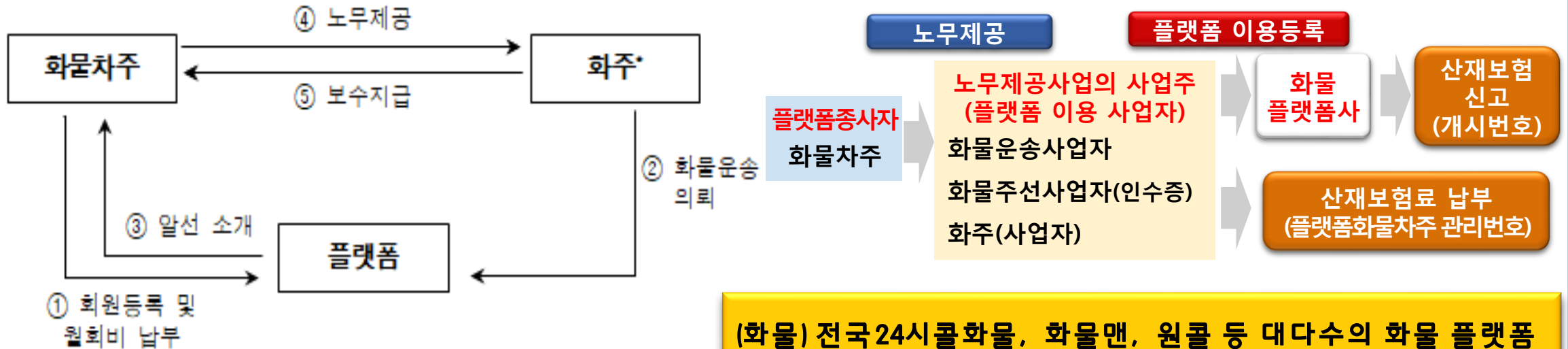
- ① 플랫폼 운영자 정보 신고
- ② 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용개시(성립신고 간주)** · 종료 신고
- ③ 매월 플랫폼 이용 사업자별로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
- ④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 납부**
- ⑤ 5년 간 노무제공 정보 보관 및 자료제공 협조 의무
- ⑥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계좌의 개설

※ 다만,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화물 플랫폼의 경우 이용종료 신고, 월 보수액 정정 및 ④·⑥의 의무 면제 → 월 보수액 정정 및 원천공제 · 납부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 (운수사업자 등)가 직접 이행

4. 플랫폼 운영자 특례

◆ 화물 전용 플랫폼 운영 실태

- 퀵·대리운전 플랫폼과 달리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사에 이용 등록하여 화물차주로부터 노무제공을 받으나 **플랫폼은 보수 미중개**
 - 플랫폼 운영자 특례 적용 대상. 다만, 플랫폼 내 보수 미중개로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 관련 신고 의무만 이행. 사업주가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화주: 화물운수업체, 사업자 화주 등 사업주

4. 플랫폼 운영자 특례

화물 플랫폼 운영자 특례 적용 기준

◆ 플랫폼 운영자 특례 적용 화물 플랫폼의 판단 기준

- 다음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 특례 적용

① 산재보험법 상 사업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있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운송의뢰에 대해 운송 중개만 행할 것*

* 플랫폼사가 주선사업자로서 해당 운송 의뢰 건을 인수하여 자기 명의로 계산으로 직접 운송(인수증)하는 경우 플랫폼사를 사업주로 적용 → 더운반, 브로캐리, 센디 등

② 플랫폼사에 등록된 화물차주가 있고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차*할 것

* 플랫폼을 통해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운송 의뢰 접수를 받으나 해당 운송 의뢰 건에 대해 다른 화물 플랫폼에 재의뢰하거나, 전화로 배차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 특례 적용 불가

4. 플랫폼 운영자 특례

화물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행정 의무

◆ 화물 플랫폼 (보수 미증개형)을 이용한 운송 의뢰 건 신고 대상 구분

● 월 보수액 신고 대상

- ‘사업주’ 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①운송사업자, ②사업자 화주, ③자기명의로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인수증)하는 주선사업자)의 운송 의뢰 건

● 월 보수액 신고 제외 대상 → 운수사업자가 직접 월 보수액 신고

- 화물 운송 의뢰자가 주선사업자로서 **증개대리(선착불)** 건으로 접수하는 경우(사업주 아님)
- 플랫폼 미등록 운수사업자 또는 화주가 전화로 플랫폼에 운송 의뢰 접수를 하는 경우*

* 운송 내용(운송 물건, 운송료 등)만 플랫폼에 입력되고 사업주에 대한 정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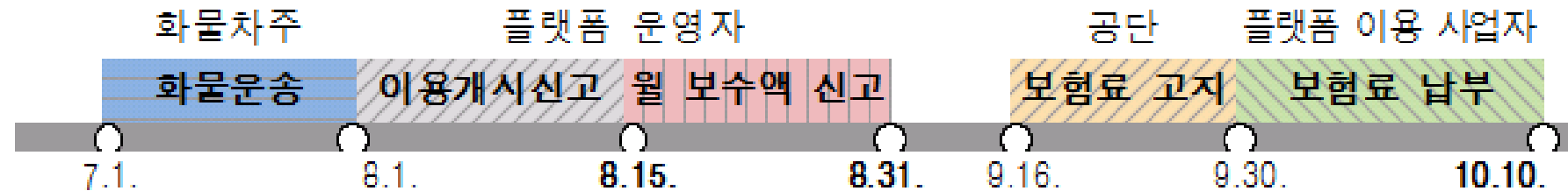
4. 플랫폼 운영자 특례

화물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험료 납부

◆ 화물플랫폼 (보수 미중개형) 이용 사업자의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한 월 보수액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보험료를 원천공제 후 플랫폼 이용 사업자 부담분과 합산하여 납부

☞ 보수 미중개형 화물 플랫폼 보험행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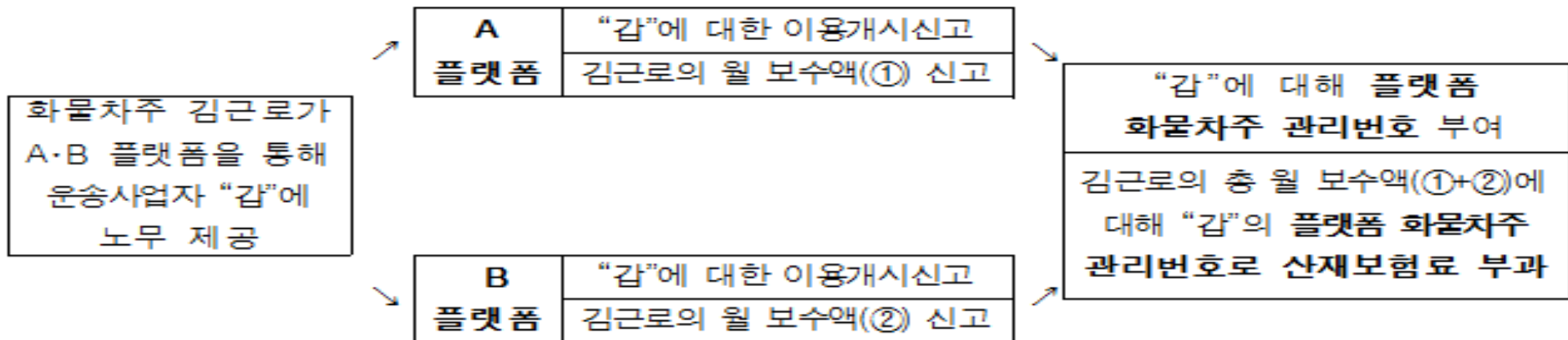


4. 플랫폼 운영자 특례

◆ 플랫폼 화물차주 관리번호

- 보수 미중개형 화물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험료 납부 관련 별도의 **플랫폼 화물차주 관리번호 부여**
 - 사업주가 복수의 화물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하나의 플랫폼 화물차주 관리번호 부여**
 - ※ 사업주가 **오프라인으로 사용한 화물차주가** 있는 경우 플랫폼 화물차주 관리번호 외 **별도의 노무제공자 관리번호**를 부여

사례) 운송사업자 “갑”이 화물플랫폼 A와 B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



5.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신청

◆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및 인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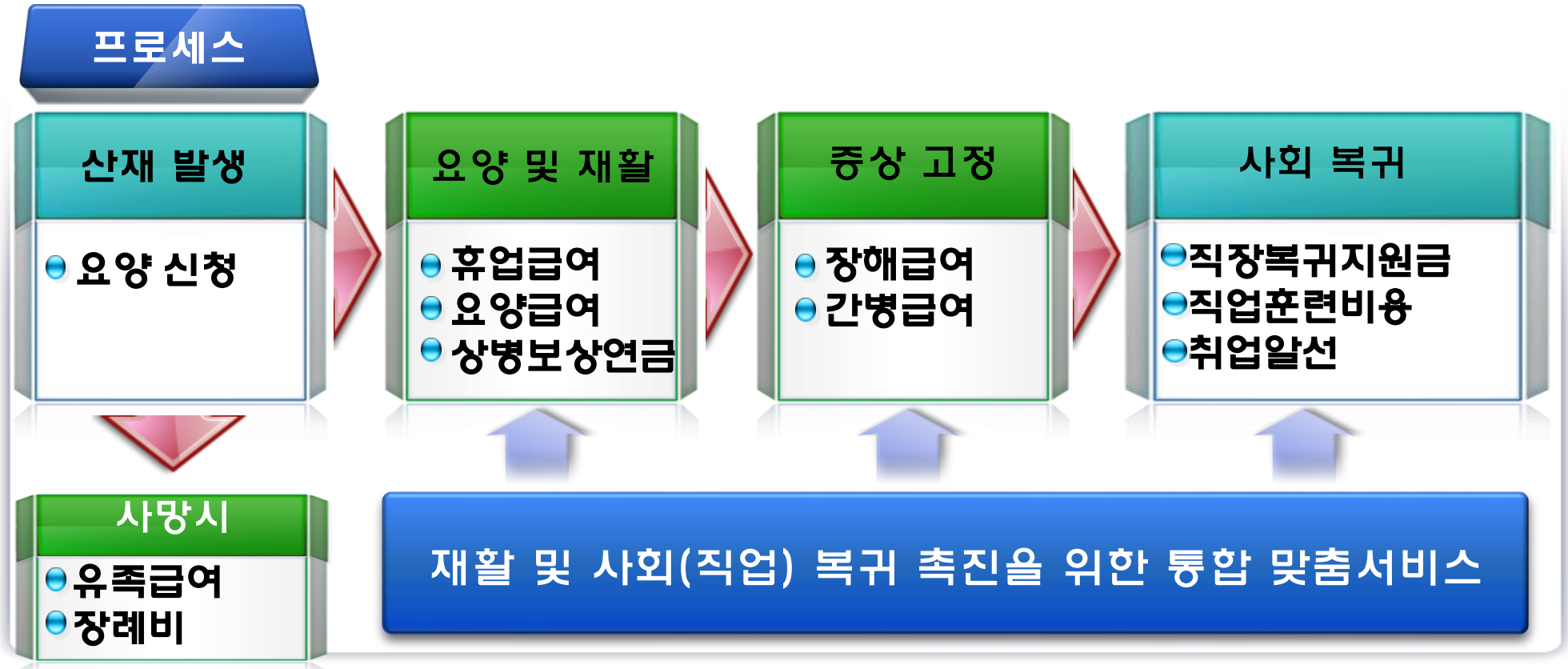
-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출·퇴근재해**를 보호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 (공단 관할 소속기관) ' 23.7.부터 기존 “사업장 소재지 관할 →
요양급여신청소건서 발급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으로 변경
- (신청) **사업주 날인('18.1. 폐지) 없이** 노무제공자 본인 서명만으로 신청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재해자를 위해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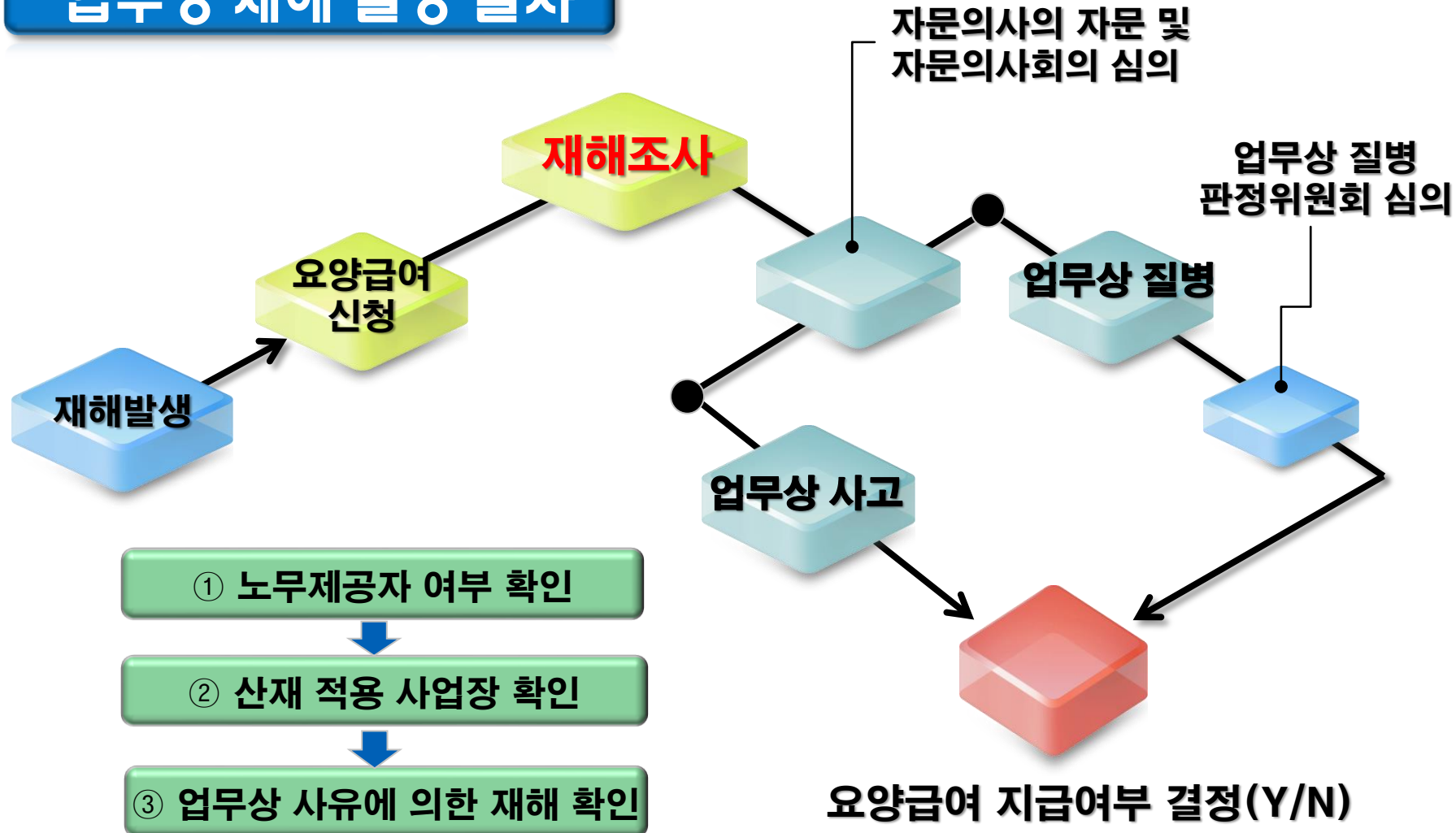
5.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산재보상 프로세스



5.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업무상 재해 결정 절차



5.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 산재보험급여

구분	급여의 종류	급여 내용
요양 중	요양급여	○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단 이 의료기관에 치료비 직접 지급 - 간병료, 이송료(통원 교통비) 등은 재해자에게 지급
	휴업급여	○ 4일 이상의 요양(입·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보수의 70% 를 지급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 경과 시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 재해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양 종료 이후	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별(1~14급) 해당하는 장해급여 [연금(1~7급) 또는 일시금] 지급 ⇒ 평균보수 × 장해연금(일시금) 일수 ※ 장해연금 일수 138일(7급)~329일(1급), 장해일시금 일수 55일(14급)~1,474일(1급)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재해자에게 지급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를 위하여 직업훈련비용 등 지급
사망 시	유족급여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연금(평균보수의 52%~67%) 또는 일시금(평균보수의 1300일분) 지급
	장례비	○ 평균보수의 120일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5.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평균보수의 산정

◆ 보험급여 지급 기초 평균보수 ※ 평균임금(고용부 고시) → 평균보수(실보수) 개편

-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현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평균보수를 산정

- **(평균보수 정의)** 재해발생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해당 사업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보수와 임금의 합산)**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
- **(평균보수의 산정)**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평균보수 산정

5.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의 지급

- ◆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공단에 신고된 전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부장관이 고시
→ '23.7 ~ '24.12. **1일당 41,150원 (30일 환산 시 1,234,500원)**

<참고>

※ 정부는 계도기간(6개월)을 두어 과태료 및 보험급여액의 징수유예

◆ 과태료

위반 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월 보수액 신고 의무 위반	신고 누락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거짓 신고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 기타 불이익

- (보험급여액의 징수) 보험관계 성립신고 전 또는 보험료 체납(50% 초과) 중 재해 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성립신고 전 재해) 또는 10%(체납 중 재해) 징수(납부할 보험료의 5배 상한)
- (연체금) 총 5% 한도 내 부과(납기 후 30일까지 하루 1/1500, 이후 하루 1/6000)



감사합니다